

[일련번호 : 2]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자동차관리법(검사)위반과태료 이의제기 관련 관할법원 지연통보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■■■■과

내 용

1. 업무개요

■■■■과는 「자동차관리법」 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·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43조(자동차검사)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신규검사·튜닝 검사·임시검사·수리검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43조의2(자동차종합검사)에 따르면 특정지역 및 특정차종의 자동차소유자는 정기적으로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이를 위반 시 같은 법 제84조(과태료)제4항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또한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(이의제기)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, 같은 법 제21조(법원에의 통보)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▣▣▣▣과는 감사대상 기간 동안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통보한 후, 같은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함에도, 최소 9일에서 최대 62일까지 지연하여 통보한 사실이 있다.

[표] 법원 통보기간 미준수 내역

연번	위반 당사자명	차량번호	이의제기일	법원통보일	지적사항
1			2022.8.26.	2022.10.26.	43일 지연
2			2023.1.26.	2023.3.23.	42일 지연
3			2023.5.30.	2023.6.22.	9일 지연
4			2024.10.2.	2024.12.17.	62일 지연
5			2024.11.7.	2024.12.17.	26일 지연
6			2025.3.6.	2025.4.28.	39일 지연
7			2025.3.18.	2025.4.28.	27일 지연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▣▣▣▣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▣▣▣▣과장은

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,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